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새로운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지난 7월 1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14년 수정판)」(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면 2014년 개정 리스트는 한층 개방되고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국제관례에 한 걸음 더 접근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는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여 14개의 관리조치를 취소하고 19개의 관리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수정초안 공표**

지난 7월 3일, 국가공상총국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이하 “규정”)을 개정하여 유명상표 사건에 대한 처리, 당사자 및 공상부서의 직책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총 21조로 구성되었는데 자세하게는 (i) 사건처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각 절차별 요건을 보완하고 (ii)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역할과 공상부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iii) 각 직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완하였으며 (iv) 유명상표사건에 대한 처리를 규범화하였습니다.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 공표**

최근 국무원은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이하 “공시조례”)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공시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시조례의 발표와 시행은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와 사후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업에게 진실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연도보고공시와 즉시 공시제도를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시조례는 신용규제시스템, 기업공시정보에 대한 추출검사제도를 구축하여 허위정보를 공시한 기업의 법적책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전생산법” 개정안, 규정의 “집행”에 초점을

지난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개정 안전생산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조치의 현실적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책임을 한층 강화하여 사고 발생 기업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